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8일, 박수영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원회(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원회(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원회(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5.2.11.)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

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 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 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